**SALC 동아리 회칙**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1. 본회는 숭실대학교 AFKN 청취회 (Soong-sil University AFKN Listening Club : SALC)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

제 2 조 (목적)

1. 본회는 AFKN 청취를 통한 실력의 향상과 모토를 바탕으로 동아리 활동을 통해 회원 상호간의 유대강화 및 정서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설치)

1. 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숭실대학교 내에 둔다.
2. 동아리 방의 위치는 학생회관 227호이다.

제 4 조 (활동 및 행사)

1. 정규 AFKN News 및 영어 관련 활동을 한다.
2. 각 계절마다 Membership Training (M.T), 신입생 환영회, 무비데이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하여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한다.
3. 교내 활동 뿐만이 아닌 교외 영어관련 활동을 통해 영어 실력의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4. 위 활동들에 대한 자세한 일정은 해당 년도의 사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진행한다.

**2 장 (회원)**

제 5 조 (회원의 구분 및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질적 향상과 친목 도모를 위하여 공동 의식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자로서 숭실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을 원칙으로 한다.
2.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고문단,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3.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4.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 및 취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5. 회원은 정회원 회의 에서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이하 정회라 한다.)
6. 회비 납부 이후 정식적인 동아리 회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7. 정식 동아리 회원으로 인정받은 자만이 동방을 사용할 수 있다. (회비 납부한 자)

제 6 조 (준회원)

1. 준회원은 본회에 입회한 재학생으로 구성한다.
2. 준회원은 입회 후 자발적인 노력으로 정회가 요구하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정회원이 될 권리를 가진다.
3. 준회원은 자신의 실력과 인격완성을 위해 정회원 및 고문단으로부터 도움을 청할 권리를 갖는다.
4. 준회원은 일부 허가된 정회를 참석할 수 권리가 있다.
5. 준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 7 조 (정회원)

1. 정회원은 준회원의 겨울 MT 까지의 활동 참여율 및 여러 요소들을 종합해 정회 이후 허가된 인원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2. 정회원은 준회원을 성실히 육성할 의무를 가진다.
3. 정회원은 본회의 모든 활동에 참석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4. 정회원은 회장단의 직책 중 하나에 참여해야 한다. (3장 제 10조 참고)
5. 정회원은 회의를 개최할 권리를 가진다. (5장 제 22 조 참고)
6. 정회원은 회비 집행을 제안할 권리를 가진다. (6장 제 27 조 참고)
7. 정회원은 징계를 발의할 권리를 가진다.

제 8 조 (고문단)

1. 고문단은 회장단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자, 3학년 이상, 4학년 이하의 재학생에 한하여 입단할 수 있다.
2. 성실하게 활동한 정회원은 고문단으로 입단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3. 정회원은 고문단으로 입단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4. 정회원은 고문단으로 입단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5. 고문단은 일부 허가된 정회를 참석할 권리가 있다.

제 9 조 (명예회원)

1. 명예회원은 고문단으로 활동하였으며 본교를 졸업예정인 회원에 대해 명예회원(O.B)의 자격을 부여한다.
2. 명예회원은 일부 허가된 정회를 참석할 수 있지만 발언권 및 결정권은 없다.

**3 장 (조직)**

제 10 조 (부서)

1. 정회원(운영단)은 다음과 같은 부서로 구성된다.

- 회장단

- 재무부

- 기획부

- 홍보부

제 11 조 (구성 및 역할)

1. 회장단의 구성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 회장

୦ OB 연락망 관리 및 연락 주도

୦ 동연회, 동대수 등 동연회 관련 행사 참가

୦ 동아리 홍보 담당

୦ 필요 시 학교 측과 연락 담당

୦ 회의 진행 및 계획

୦ 활동보고서 작성

୦ 동아리 신입생 관리

- 부회장

୦ 회장 업무 보조

୦ 회의 진행 및 계획

୦ 동아리 홍보 담당

୦ 동아리 신입생 관리

2. 재무부

- 총무

୦ 회의록 작성 및 결과 공지

୦ 각 부서 총괄 및 회장단 보조

୦ 중요 공지 관리

- 회계

୦ 장부 관리

୦ 회비 통장 관리

୦ 행사 전후 예산 점검

୦ 동방 자산관리

1. 기획부의 구성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 기획부장

୦ 기획부원 업무 분담 배정

୦ 업무 총 정리 및 발표

୦ 타 부서 협조 요청 및 진행

- 기획부원

୦ 행사 장소 선정

୦ 예산 집행

୦ 예산 관리

୦ 행사 일정 계획

୦ 행사 인원 배정

୦ 행사 관리 및 진행

1. 홍보부의 구성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 홍보부장

୦ 활동 공지

୦ 활동 계획 수립

୦ 활동 역할 배분

୦ 타 부서 협조 요청 및 진행

- 홍보부원

୦ 활동 진행

୦ 홍보지 제작

제 12 조 (부서 이동 희망)

1. 회장단은 자신의 업무가 자신과 맞지 아니하거나 업무에 지장이 있을 때 부서 이동을 희망할 수 있다.
2. 부서 이동은 정회의 안건으로 다룬다.
3. 부서 이동은 해당하는 부서의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4. 부서 이동 결과는 협의된 날짜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5. 부서 이동 이후 모든 회원에게 해당 사실을 공지한다.

제 13 조 (업무 불이행)

1. 회장단은 자신이 맡은 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
2. 자신의 업무에 대한 불이행으로 인하여 동아리에 피해를 입힐 경우 징계할 수 있다. (8장 제 33조 참고)

**4 장 (정규 활동)**

제 14 조 (정기 활동)

1. 정기활동은 주 3회 진행되며 진행 요일은 개강 전 정회에서 결정한 후 공지한다.
2. 정기활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팝송 활동

- 뉴스 활동

- 자율 활동

제 15 조 (특별 활동)

1. 특별활동은 정회원의 회의를 통해 팝송활동 또는 자율활동을 진행한다.
2. 특별활동 개설은 최소 1주전 요청해야 한다.
3. 특별활동 개최에 관한 업무는 회장단 및 기획부장이 담당하는 것으로 한다.
4. 특별활동 진행에 대한 내용은 회장단 및 기획부가 진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 16 조 (활동 참여)

1. 정회원은 정규 활동의 참여성과 적극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정회원은 활동 참여 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정회원은 주 3회 활동 중 최소 2주에 한 번 이상 참여해야 한다.
4. 정회원은 최소 의무 활동 횟수를 지키지 아니할 시에는 징계할 수 있다. (8장 제 34조 참고)

**5 장 (회의)**

제 17 조 (구분 및 진행)

1. 회의는 정기회의, 임원회의, 임시회의로 구성된다.
2. 정기회의, 임시회의의 구성원은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허가된 회의에 한해 준회원, 고문단, 명예회원의 참석을 허가한다.
3. 정기회의, 임시회의는 정회라 칭한다.
4. 정회 또는 임시회의에서 진행되는 안건은 해당 회의 참석자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5. 회의 불참자는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이의제기 할 수 없다.

제 18 조 (정기총회)

1. 정기총회는 매 학기말에 개최하며 총 2회로 한다.
2. 정기총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기 예산 집행 내역 및 평가

- 학기 영어활동 보고 및 평가

- 학기 회장단 활동 보고 및 평가

- 추후 계획안 발표

제 19 조 (임원회의)

1. 임원회의는 동아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논의한다.
2. 임원회의는 4주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임원회의는 정회원 모두가 참석할 의무가 있다.
4. 임원회의는 최소 일주일 전 재 공지하며 회의 안건과 상세 진행 사항은 부회장 또는 총무가 공지하도록 한다.
5. 회의 안건의 경우 최소 하루 전 공지한다.
6. 일부 정회의 경우 정회원을 제외한 자에 대한 참석을 불허할 수 있다.

제 20 조 (회의 참석)

1. 정회원은 임시회의를 제외한 모든 회의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
2. 정회원은 회의 참석 시 성실하고 객관적으로 회의에 참여해야 한다.
3. 회의에 불참하게 될 경우 해당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어떠한 의견도 발의할 수 없다.
4. 회의에 지각하게 될 경우 10분당 1,000원 최대 3,000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5. 회의 시작 전 회의에 부득이 하게 지각함을 사전에 알릴 시 징계하지 아니한다.
6. 30분 이상 지각 시 회의 불참으로 간주한다.
7. 회의에 불참할 경우 징계한다. (8장 제 35조 참고)

제 21 조 (임시회의)

1. 임시회의는 정회원 절반이상의 요구와 회의개최권을 사용하여 개최할 수 있다.
2. 임시회의의 개최가 확정되었을 경우 최소 3일 전 진행을 공지한다.
3. 임시회의의 회의 안건은 개최자가 최소 하루 전 공지한다.
4. 임시회의에 대한 불참은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 6 장 (재정)**

제 22 조 (수입)

1. 동아리의 수입은 회비로 정하며, 이는 본 동아리의 활동비 및 동방 관리비로 사용한다.
2. 예산 분배에 관한 내용은 정회에서 진행한다.
3. 예산 집행 시 결과 보고는 사용 다음날까지 공지하여야 한다.

제 23 조 (회비)

1. 본 동아리의 모든 회원은 회장단이 지정하는 일정액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2. 회비는 개강 전 정회에서 결정 후 공지하도록 한다.
3. 회비의 사용은 다음과 같다.

- 활동 지원 비

- 동방 물품 구입 비

- 동방 물품 관리 비

1. 동아리에 관한 시설 및 활동은 회비를 낸 자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 24 조 (환불)

1. 회비의 환불 요소는 다음과 같다.

- 활동 시작 전 : 전액 환불

- 활동 시작 후 : 환불 불가

1. 환불에 대한 내용은 정회에서 해당 환불에 대한 토의 이후 진행하도록 한다.

제 25 조 (사용)

1. 회비의 사용은 정회 또는 구매 요청권에 의거하여 진행한다.
2. 구매 요청권은 회비사용이 동아리 운영에 필요한 경우 회비 사용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다.
3. 구매 요청권 사용 시 구매 물품, 가격, 이유 등 자세한 정보를 포함하여 기획부에 요청하도록 한다.
4. 구매 요청 시 해당 안건에 대한 내용은 정회에서 진행한다.
5. 구매 요청에 대한 사항은 정회 참석자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6. 회비 집행은 회계가 다루도록 한다.

**제 7 장 (동아리 관리)**

제 26 조 (회원의 가입)

1. 본 동아리의 회원가입은 정회원(운영단)이 정한 규칙에 따른다.
2. 본 동아리의 회원가입 시 이름, 학번, 연락처 등 필요한 정보가 담긴 입부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준회원으로서 가입은 회비 납부 이후 최종 승인된다.

제 27 조 (회원의 탈퇴)

1. 탈퇴를 희망하는 회원은 회장단에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탈퇴가 성립된다.
2. 동아리 탈퇴 이후 동아리 관련 활동 및 시설 등 동아리에서 제공하는 혜택이 전면 취소된다.
3. 탈퇴 시 회비에 관한 내용은 정회에서 다루도록 한다. (제 6장 26조 참고)
4. 탈퇴 시 관련된 해당 서류를 작성 후 진행하도록 한다.
5. 관련 서류 작성 및 승인 이후 탈퇴는 그 즉시 진행하도록 한다.

제 28 조 (회원의 추방)

1. 회원의 추방은 징계에서 결정한다.
2. 회원의 추방의 고려요소는 다음과 같다.

- 사회의 통념과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을 때

- 동아리에 피해를 입히는 행동

- 기타 정회에서의 징계 결과

1. 추방된 회원은 탈퇴한 회원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다.
2. 관련 서류 작성 및 승인 이후 추방은 그 즉시 진행하도록 한다.

제 29 조 (회원의 개인정보)

1. 회원의 개인정보는 탈퇴 이전까지 동아리에서 소유하도록 한다.
2. 회원이 탈퇴 또는 추방되었을 시 개인정보는 이후 1년간 보관 후 폐기하도록 한다.

**제 8장 (징계)**

제 30 조 (목적)

1. 본 동아리의의 정회원은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2. 본 동아리의의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운영과 본회를 통한 정당한 운영을 통해 동아리원의 자유를 보장한다.
3. 한편 일부 동아리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부당한 처사를 막기 위해 중요한 자치 활동에 대해 징계를 둔다.

제 31 조 (진행)

1. 징계는 해당 부서 또는 동아리원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할 시 정회원의 징계 발의로 이루어진다.
2. 징계는 정회의 첫번째 안건으로 다룬다.
3. 징계는 정회원 2/3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집행하도록 한다.
4. 징계 대상자는 투표 전 마지막 발언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 징계는 익명투표로 진행한다.
6. 징계에 대한 회의는 행정부가 진행하도록 한다.

제 33 조 (업무 징계)

1. 정회원은 회장단의 직책을 맡아 성실하고 정직히 자신이 맡은 업무를 책임져야할 의무가 있다.
2. 이를 지키지 아니할 시에는 동아리의 운영에 피해가 있으므로 해당 대상자를 징계할 수 있다.
3. 업무 소홀에 대한 징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개사과

- 벌금

- 경고

- 추방

- 기타 협의 안

제 34 조 (활동 불참)

1. 정회원은 활동의 참여율과 적극성 향상을 위해 주 2회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가 있다.

(최소 2주에 1번 이상 참여할 의무가 있다.)

1. 정회원은 최소 의무 활동 횟수를 지키지 아니할 시에는 징계할 수 있다.
2. 활동 불참에 대한 징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회 불참 : 벌금 10,000 원

- 2회 불참 : 벌금 20,000 원

- 3회 불참 : 벌금 40,000 원

- 4회 불참 : 경고 및 벌금 80,000원

- 5회 불참 : 추방

1. 다만 정회원 2/3 이상이 동의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지 아니한다.

제 35 조 (회의 불참)

1. 정회원은 개최되는 정기총회 또는 임원회의에 성실하게 참여할 의무가 있다.
2. 임원회의에 불참하게 될 경우 징계할 수 있다.
3. 회의 불참에 대한 징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회 불참 : 경고

- 2회 불참 : 벌금 10,000 원 및 2차 경고

- 3회 불참 : 동아리 추방

1. 회의 불참의 경우 사유에 대한 불참 인정은 회의 전 미리 회장단에게 연락하여 불참 사유 인정을 받도록 한다. 회장단에게 알리지 않은 불참은 무단 불참으로 간주한다.
2. 해당 사정으로 인한 불참의 경우 허용 여부는 해당 회의에서 진행하도록 하며 해당 사유에 대한 불참 인정은 해당 회의 참석자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제 36조 (기타 사항)

1. 동아리에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회원은 징계할 수 있다.
2. 징계의 내용은 협의 후 진행하도록 한다.

제 37 조 (결과)

1. 징계 결과는 투표 종료 즉시 효력이 발생된다.
2. 징계 내용중 벌금에 대한 징계는 해당 회의 이후 1주일 이내로 납부하도록 한다.
3. 징계 결과는 징계 다음날 기준 일주일간 동아리방에 공지한다.

**제 9 장 (회칙)**

제 38 조 (개정 제안권)

1. 회칙 개정은 정회원에 한하여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2.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은 정회에서 다루도록 한다.

제 39 조 (개정 투표)

1. 회칙 개정은 정회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2. 회칙 개정에 관한 투표는 익명 투표로 진행한다.

제 40 조 (개정안 공시 기간)

1. 개정된 회칙의 경우 회의 다음날 기준 일주일 동안 동아리방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41 조 (적용)

1. 개정된 회칙은 공시기간이 종료되는 날짜의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 42 조 (비상 상황)

1. 국가 재난사태 혹은 이에 준하는 상황의 경우 기존 내용의 회칙보다 우선시 할 수 있는 비상 회칙을 재정 할 수 있다.
2. 비상 회칙의 경우 적용 기간은 최대 1학기로 한다.
3. 비상 회칙의 내용은 해당 년도 회장단의 정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며 정회 참석자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제 10 장 (부칙)**

제 43 조 (회칙 발효)

1. 각 개정안의 개정 회칙은 다음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초 판 [ 2015.01.09 ]

개정 1판 [ 2020.06.22 ]

개정 2판 [ 2020.06.28 ]

개정 3판 [ 2020.07.10 ]

개정 4판 [2020.11.07 ]

개정 5판 [2021.03.05]

개정 6판 [ 2022. 03. 28 ]

개정 7 판 [2024.03.12]